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예비비 지출 현황

- 지출결정액 : 372억 1천 2백만원
 - 지출액 : 371억 2천 4백만원
 - 이월액 : 0원
 -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 : 8천 8백만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0.2%가 발생하였음.

〈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집행잔액 마 = 가 - 다 - 라
계		37,212	37,212	37,124	-	8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사무관리비	295	295	274	-	21
	공공운영비	304	304	278	-	27
	시설비	163	163	138	-	25
	자산및물품 취득비	38	38	32	-	6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추진	사무관리비	179	179	175	-	4
	시설비	25	25	20	-	5
지방선거 관리	기타부담금	30,919	30,919	30,919	-	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288	5,288	5,288	-	0

II . 검토의견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예비비 지출

- 행정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방역소독(4천만원) 실시(본청사 및 시청별관)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설치(2억 2천 1백만원) 및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4억 7천만원) 등 총 4건에 8억원을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하였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비비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지출액	사유	승인일
세부사업명	통계목	증	감				
계		800,659	-	800,659	722,18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공공운영비	40,000		40,000	32,500	코로나19 확산방지 본청사, 별관 소독 실시	20.3.27
	사무관리비	56,390	-	56,390	43,472	이동식 선별진료소 (Drive-Thru)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13,534	-	53,534	28,903		
	사무관리비	77,065	-	133,455	156,194		
	공공운영비	64,670	-	118,204	76,967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시설비	79,000	-	79,000	64,401		
	사무관리비	161,675	-	295,130	74,748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20.4.20
	공공운영비	186,000	-	304,204	139,301		
	시설비	84,000	-	163,000	73,525		
자산취득비	38,325		38,325	32,172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1) 및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 서울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청사소독, 생활치료센터 설치,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의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1)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코로나 19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 소독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설치,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예비비 지출에 따른 집행율은 90.2%(7억 2천 2백만원)로 양호해 보이나, 세부사업별 집행률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 이는 예비비 지출 결정시 부실한 세부산출 기초산정에 의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에 있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이 지출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예비비 지출내역 및 집행율]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승인사유	예비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율
계		800,659	722,182	90.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청사 소독방역	40,000	32,500	81.3%
	이동식 선별진료소	69,924	72,375	103.5%
	생활치료센터	220,735	297,561	134.8%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470,000	319,746	68.0%

- 또한, 코로나 19 지속에 따른 청사 소독방역과 청사별 입출입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코로나 19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생활치료센터(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설치·운영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 : 총 8개소(서울4, 경기4)

구 분	운영 개요	수용 인원	연계 의료기관
남산 생활치료센터 (6.4(목)~, 중구 퇴계로)	○ 시설명 : 서울(남산)유스호스텔(지하1층, 지상 7층) ○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 규 모 : 총50실(최대 3인1실, 가족실 등)	118	보라매병원
태릉 생활치료센터 (8.19(수)~, 노원구 화랑로)	○ 시설명 :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지하2층, 지상4층)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 규 모 : 총191실(2인1실 운용) ※ 최대수용인원 350명 중 누수발생 등 사용불가 객실 제외	310	서울의료원
한전 생활치료센터 (8.22(토)~, 노원구 공릉동)	○ 시설명 :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형광사(지상 3층)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30(공릉동) ○ 규 모 : 총62실(2인1실 운용)	124	서울대병원
은평 생활치료센터 (8.25(화)~, 은평구 진관동)	○ 시설명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세빛관(지하1층, 지상 6층)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 규 모 : 총85실(2인1실, 가족실 운용)	173	은평성모병원
국제교육원 생활치료센터 (8.27(목)~, 성남시 분당구)	○ 시설명 : 국립국제교육원 아리랑하우스(지하2층, 지상 6층)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 규 모 : 총108실(2인1실, 가족실 운용) ※ 임시운영중단: 9.16.(수)~	227	서울대병원
코이카 생활치료센터 (9.1(화)~, 성남시 수정구)	○ 시설명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지상 4층)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 규 모 : 총248실(1인1실, 가족실 운용)	256	서남병원
용인삼성 생활치료센터 (9.7(월)~, 용인시 처인구)	○ 시설명 :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숙소동(지상 5층)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74 ○ 규 모 : 총93실(2인실, 3인실 운용)	212	중앙보훈병원
용인SK 생활치료센터 (9.15(화)~, 용인시 처인구)	○ 시설명 : SK아카데미 행복관(지상 4층)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모래실로 17 ○ 규 모 : 총85실(2인실, 3인실, 가족실 운용)	209	국립경찰병원

○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과 피로누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관련 예비비 지출

○ 행정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소요예산을 예비비로 52억 8천 8백만원을 지출하였음.

[예비비 사용규모 : 5,288,361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801-01)	59,036,111	-	5,288,361	53,747,750
긴급재난지원	긴급재난지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06,281,324	5,288,361	-	2,511,569,685

< 사업개요 >

- ▶ 지원대상 : 모든 시민 (4,285,405가구)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 ▶ 사업기간 : 2020. 5. 4(월) ~ 8. 31.(화)
- ▶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 원칙
- ▶ 지원금액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택일)

[총소요예산 : 2조 7,089 억원 (國 22,171 : 市 3,283 : 區 1,635)]

○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단위 : 가구, 백만원)

신청가구 현황			지원 금액			
계	신청가구	미신청가구	계	지급금액	기부금액	*미신청금액
4,352,212	4,169,284 (95.8%)	182,928 (4.2%)	2,701,639	2,613,341 (96.7%)	8,356 (0.3%)	79,942 (3.0%)

* 기부금액 : 지급수단별 재난지원금 신청시 일부 또는 전부 기부금액의 합

** 미신청 금액 : 의제기부금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지급수단별 신청 내역

(단위 : 가구, 백만원)

구분	합 계	신용체크 카드	선 불 카드	서울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현 금	기 부 (모집+의제)
가 구	4,352,212 (100%)	3,048,628 (70.0%)	685,529 (15.8%)	24,352 (0.5%)	2,988 (0.1%)	407,517 (9.4%)	182,928 (4.2%)
금 액	2,701,639 (100%)	1,980,515 (73.3%)	426,188 (15.8%)	16,923 (0.7%)	1,197 (0.0%)	188,445 (7.0%)	88,298 (3.3%)

○ 예비비 지출은 이혼 및 동거인 가구 분리, 외국인 가구 등 신규가구 신청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대상가구 증가로 추가 소요예산(417억9천 1백만원)이 필요하였으며, 총 소요예산 중 서울시 분담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당초)4,285,405가구 → (최종)4,352,212가구(66,807가구 증가)

구 분	총 소요예산				기존 예산				증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2,708,918	2,217,174	328,254	163,490	2,667,127	2,183,316	322,965	160,846	41,791	
재난지원금	2,701,639	2,212,048	326,393	163,197	2,659,848	2,178,190	321,105	160,553	41,791	
부 대 비 영	발 행 비	2,563	2,188	250	125	2,563	2,188	250	125	-
	운영비	3,441	2,938	335	168	3,441	2,938	335	168	
	현 장 인 원 비	1,275	-	1,275	-	1,275	-	1,275	-	

○ 행정안전부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원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 필요한 예산으로 총 소요예산 매칭비율은 82(국비):18(지방)인 바,

- 지방비 부담분은 당초대로 2(시):1(구)로 분담하여 서울시비 (52억 8천 8백만원) 필요분에 따른 것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계	국 비(82)	지방비(18)			비고
			시비(2)	구비(1)	
41,791	33,858	7,933	5,288	2,644	

- 동 건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될 수 있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률이 0.3%(83억 5천 6백만원)로 저조하게 나타난 바, 행정국에서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문화 정착 등의 홍보 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 ①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8월 31일(3개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799억 4천 2백만원(3%)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제기부금으로 환수되었는 바, 서울시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제공의 미흡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정부에서는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긴급재난금이 지급될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연말소득 공제 등 관련 세제 혜택과 규정 개정 요청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2021년 재·보궐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

- 행정국은 2021년 4월 7일(수)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 경비를 예비비(309억 1천 9백만원)로 지출하였음.

[예비비 사용 규모 : 30,919,10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예비비사용	21년 본예산
서울시장 보궐선거	57,099,034	30,906,755	26,192,279
시 의 원 재 선거	104,153	12,353	(91,800)*
(합 계)	57,203,187	30,919,108	26,192,279

- 재·보궐선거(2021.4.7.) 실시에 소요되는 선거준비 사무경비 및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할 선거관리 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재·보궐선거 실시개요]

- 선거일 : '21. 4. 7.(수), 06:00 ~ 20:00
- 선거지역 : 2개 지역

선출대상	선출인원	대 상 지 역	사유확정일	비용부담	비 고
시 장	1명	서울시	'20.7.10	전액 시비	보궐선거
시의원	1명	강북구1	'20.10.29	전액 시비	재선거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 경비는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정의무사항인 바, 예비비 지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 제7조(납부기한)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서울시는 재·보궐선거(2021.4.7.)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를 납부기한(2020.11.8)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관련 규정(「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 제7조)을 준수하지 못하였는 바, 행정국은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2020년도 제4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2020.9.4.)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련 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행정행태라고 볼 수 있는 바, 의회의 예산심의권 훼손에 대한 행정국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서울특별시장 장례 관련 예비비 지출

- 행정국은 서울특별시장의 사망(2020.7.9.)에 따라 장례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예비비(2억 1천 1백만원)로 지출하였음.

[예비비 요구액 : 총 211백만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증	감	
계					211,000	211,000	
행정지원 체계 강화	행정 관리지원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추진	사무관리비 (201-01)	-	186,000	-	186,000
			시설비 (401-03)	-	25,000	-	25,000

[장례 개요]

- 장례종류 : 기관장(서울특별시장)
- 장례기간 : 5일장(20. 7. 9.(목) ~ 7.13.(월) ※ 발인일 7.13.(월))
- 장례절차·진행 :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 장례위원회 구성
 - 공동위원장으로 서울시, 시민사회, 정계 대표를 위촉
 - 부위원장, 고문, 상임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및 장례위원으로 구성
- 주요구성

장례식장 빈소

+

분향소

+

영결식

+

운구이송

(서울대병원)

7. 9.~7.12.

(서울광장)

7.11.~7.13.

(서울시청)

7.13.

(장지)

7.13.

- 빈 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일장(7.10.(금) 12:00 조문개시)
- 분향소 : 서울광장(7.11.(토) 11:00~22:00, 7.12.(일), 7.13.(월) 08:00~22:00)
- 영결식 : 본관 8층 다목적홀(7.13.(월) 8:30 ~ 9:30)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3) 및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기관장 대상에는 ‘현직 장·차관’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장이 ‘장관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특별시장(葬)으로 판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임.

※ 기관장은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추진하는 가족장과는 달리 당해 기관이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 명의로 주관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임.

○ 서울시장(葬)으로 진행되는 근거는 행정안전부 「정부의전 편람」에 규정한 ‘기관장’이며, 편람은 기관장에 대해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의 사망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서울시장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장청장에 관한 조례안」안이 발의(2020.8.12.)되어 계류되어 있음.

「정부의전편람」 277페이지 발췌.

기관장은 「군예식령(대통령령)」, 「국회장의규정」 및 각급 기관의 자체예규로 대상과 장례 절차를 정하여 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관례 등을 정리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관장은 기관의长在 재직 중 사망한 경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때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관장 대상

- 국 회 장 : 현직 국회의원(국회장의규정)
- 정 부 장 : 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결정
- 각 부처장 및 기관장 : 현직 장·차관, 부처직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 각 군장 및 부대장(경찰장 등 유사) : 현직 총장·차장, 각급 부대장, 작전수행 중 전사자

3)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5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전편람」에는 구체적인 장례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참고자료]

예비비 지출요구서(1)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 소요액③	예비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계									330,659	330,659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예방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	-	-	173,455	173,455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예방	일반 운영비 (201)	공공 운영비 (201-02)	-	-	-	78,204	78,204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	-	-	79,000	79,000	
<p>〈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p> <p>○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식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등 비용정산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0 년 3월 23일 행정국장</p> <p>기획조정실장 귀하</p>											

예비비 지출요구서(2)

(단위:천원)

구 분 조 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 소요액	예 비 비 요구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계										470,000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예방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133,455				161,675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예방	일반 운영비 (201)	공공 운영비 (201-02)	118,204				186,000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79,000				84,000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예방	자산취 득비 (405)	자산및 물품취 득비 (405- 01))	-				38,325	
<p>〈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p> <p>○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비용정산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을 신청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0 년 4월 13일 행정국장</p> <p>기획조정실장 귀하</p>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3)

(단위:천원)

구 분 조 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 소요액	예비비 요구액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계										5,288,361	
기획 조정실	일반 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01)	59,036,111	5,288,361	53,747,750	-	-	
행정국 자치 행정과	긴급 재난 지원	긴급 재난 지원	코로나 19 긴급 재난 지원금	자치 단체등 이전	자치 단체 경상 보조금	2,506,281,324	-	-	-	5,288,361	
<p>〈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p> <p>○ 이혼, 출생, 다문화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특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 발생하여 예비비 사용을 통한 재원 마련 필요</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0년 11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행정국장</p> <p>기획조정실장 귀하</p>											

예비비 지출요구서(4)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 소요액	예비비 요구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계											
기획조정실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801-01)	98,547,183	30,919,108	67,628,075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선거 관리	부담금	기타부담금 (308-12)	-	-	30,919,108		30,919,108	
<p>〈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p> <p>○ '21.4.7 재·보궐선거 실시예 소요되는 선거준비 사무경비 및 市선관위에 지급할 선거관리 경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0 년 10월 일 행정국장</p> <p>기획조정실장 귀하</p>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5)

(단위:천원)

구 분 조 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후 소요액	예 비 비 요구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계										211,000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 지원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기념장 추진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201-01)	-				186,000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 지원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기념장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				25,000	
<p>〈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p> <p>○ 기관장 사망에 따라 장례식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비용정산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을 신청함(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지출에 해당)</p> <p style="text-align: right;">2020 년 7월 15일 행정국장</p> <p>기획조정실장 귀하</p>											